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04)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3. 23. 김석한 의원 등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23. 04. 03.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4. 12.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수정가결

2. 제안이유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현행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규정 내용에 맞지 않는 제명으로서 그 내용 또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전문임업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나.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 예고기간: 2023. 3. 27.(월) ~ 2023. 4. 3.(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있음

제 정 안	제출의견(녹지공원과)	검토의견	반영 여부
<p>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조 제목은 ‘적용 범위’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음</p> <p>⇒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 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의 관내 주소이전을 독려하기 위함</p>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목적 및 제출자

- 본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적용조례인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 안전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 제5조)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범위]와 [조례의 적용범위]의 의미가 다르고, 특히,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둔 임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4. 12. 수정가결 함.

붙 임: 1. 수정안 제안서

2.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3. 수정안 대비표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604호
------	--------

발의연월일	2023. 4. 12.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임업인 등의 관내 주소 이전을 독력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함.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u>지원할 수 있다.</u></p> <p>1. (생략) 2. (생략)</p>	<p>제4조----- ----- ----- ----- <u>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 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u></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